

교육현장

부패·공익침해 행위

집중신고기간

기 간

2022. 10. 17.(월) ~ 11. 30.(수)

신고분야

교육현장 부패·공익침해 행위

학교계약(공사, 물품, 용역 등), 학교 운동부, 학교급식,
현장학습, 방과후 학교, 교직원 복무 등

상 담

☎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신고방법(인터넷)

전라북도교육청 부패·공익신고센터(www.jbe.go.kr)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리고 싶지 않으시다면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이용하세요.



비밀은
보장



신변은
보호



불이익
금지



용기는
보상

부패행위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사익을 도모하거나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경쟁	공공의 이익
불량식품 제조-판매	부실시공	대기오염 물질 불법배출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기업간 담합	거짓 채용광고

※ 교육부 소관 법령 :

자격기본법, 학교급식법, 학교보건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유아교육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 교육현장 부패 · 공익침해 사례 >

- ▶ 교원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 ▶ 학부모로부터 금품등 요구 · 수수하는 행위
- ▶ 학교급식 불량 식재료 사용 등 식품위생 관련 위반행위
- ▶ 헌 교과서, 폐지 등 재활용품을 수거업체에 판매하고 대금 횡령
- ▶ 출장여비, 초과근무수당, 가족수당 등 부당 수령
- ▶ 스쿨버스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
- ▶ 시중 단가보다 높은 단가로 물품 구매 후 업체로부터 차액 편취